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6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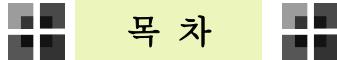
2020. 2. 24.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목 차

I . 코로나19(COVID-19)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1
4. 치료	1
5. 예방	2
II . 대응 방안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4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5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7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9
4. 추가 안내 사항	9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9
나. 유연근무제 활용	10
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1

<참고·붙임 목록>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12
참고2)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13
참고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14
참고4)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16
참고5)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17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21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22
참고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23
붙임1) 감염병 예방 수칙	24
붙임2) 코로나19 예방 수칙 포스터	26
붙임3) 코로나19 관련 Q & A	28
붙임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47
붙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51

1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중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임상적 특성

-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C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현재 정확한 잠복기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하여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하여 관리

3 진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4 치료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5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 해외,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1 목 적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2 기본 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코로나19의 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토록 한다.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붙임 1)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한다.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불임6) 참조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마스크 사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이 없도록 착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로 닦는다.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②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③의료기관 방문자, ④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 *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일부 발췌]

-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 중국의 경우 여행정보제도에 의해 후베이성은 3단계(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 한 철수·여행취소), 후베이성 제외 중국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신변 안전 특별유의·여행 신중검토)의 여행경보 발령('20.1.28 기준)
 -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급적 여행 삼가('20.2.10 기준)
 - 해외에서 입국 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체점검표(참고3)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 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4.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 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6판) 에서 복제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입원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감시)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의사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이상 폐렴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또는 공공병원으로 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유증상자는 인지 즉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이송 격리 ○ 의사환자와 접촉자 중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선별 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조사 대상 유증 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조치 - (음성) 증상발현일 또는 입국일 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 교육 내용 준수 권고

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20.1.27), 「심각」 단계('20.2.23)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웃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참고5**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붙임1**감염병 예방 수칙****1. 유의사항****□ 생활 속 예방수칙**

-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말기
-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 손씻기
-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
-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하며 중증 환자 외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진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에 잘 따를 것

□ 병문안 등 의료기관 방문시 준수사항

- ▶ 되도록 병문안 자체,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을 삼가도록
- ▶ 병문안할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위생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 ▶ 병문안 후, 보건요원 등의 문의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정직하게 응하기

2. 감염병 예방 국민수칙



붙임2

코로나19 예방 수칙 포스터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일반국민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치차 이용 권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2.21

붙임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 & A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 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3.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2020년 2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Q4.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 했다가 사멸합니다.
-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Q5. 해외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촉자>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8.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9.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쟁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10.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1.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13.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1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확진자 이동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Q15.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C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20.2.20.기준>

Q16.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Q17.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하기도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2.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
 -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19.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21.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Q22.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24.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검역>

Q25.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Q26.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행>

Q27.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8.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9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15 기준)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9.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 방문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합니다.
- 후베이성외 중국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Q30.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Q32.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합니다.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33.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보건당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34.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접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그러나 인공호흡기나 그 외 호흡기 관련된 의료적 처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치치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Does the new coronavirus spread through aerosols?
When people sneeze or cough, they may spray big droplets but the droplets do not stay suspended in the air for long. They fall. Health care procedures like intubation can spray small droplets into the air. Bigger droplets fall quickly. Smaller ones fall less quickly. We know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MERS-CoV and finding RNA in air filtration systems (but not the live virus). However, for the new coronavirus, we still need to see the data and understand how transmission has been assessed.

Q35.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 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 (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이다.”라고 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Can 2019-nCoV be caught from a person who presents no symptoms?

: According to recent reports, it may be possible that people infected with 2019-nCoV may be infectious before showing significant symptoms. However, based on currently available data, the people who have symptoms are causing the majority of virus spread.

Q36.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 Am I at risk for COVID-19 from a package or products shipping from China?
(Currently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ransmission of COVID-19 associated with imported goods and there have not been any cases of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associated with imported goods.)

Q37.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WHO, Q&A on coronaviruses : Can I catch 2019-nCoV from my pet?)

(No, at pres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companion animals or pets such as cats and dogs have been infected or have spread 2019-nCoV.)

Q38. 여행 중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6. 기준)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 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 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Q39.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하나요?

-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적용대상
 -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 다. 마스크 사용법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며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 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 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20.02.21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 일부 발췌)

-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 [대상별 맞춤정보]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검색]

I 목적 및 기본방향**1. 목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 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절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동원) 중단**
 -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사업장 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버스 · 철도 · 지하철 · 택시 등은 개찰구 · 손잡이 · 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 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 요양보호사 · 간병인 · 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불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 일부 발췌)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일람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I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
 - 소독제를 적신 천(타올)을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2. 소독 전 준비 품목

- 개인 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화, 고글 등)
 - *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를 착용하고 김연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로 착용

○ 환경 소독제 (붙임 1)

- (종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폐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 ☞ [붙임 1]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500ppm, 1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기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금속)에 사용
- *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붙임 1)
- 갈아 입을 옷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쓰레기통, 일회용 천(타올), 물 등 (붙임 2)

3. 소독 중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한쌍)을 착용
-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벗어 버리고 다시 착용

4. 소독 후 예방 조치

-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
-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 ☒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 제거하며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중요
-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 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붙임 4의 절차를 따름
 - * 사용한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후에 소독
-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 대상별 소독방법

1. 환자의 거주 공간

-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 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히 세척
-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둘 것
-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하여 소독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음
 - * 손잡이, 팔걸이, 시트백, 테이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
- 침대 시트, 배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을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C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배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치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사용한 모든 천(타올) 및 청소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장갑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마스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 ☞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 · 처리 매뉴얼 참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로 표면을 닦기

2. 환자에 노출된 지역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
-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
 -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
 - 고글(사용하는 경우)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 후마다 소독
 -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스프레이로 소독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
-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 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양동이는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 용액을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행궈서 소독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